

	<h2 style="margin: 0;">명예교수 임용규칙</h2>		규정번호		3-2-21
			제정일자		2021.01.01.
			개정일자		2021.03.01.
			개정번호	Ver. 1	총페이지

제정 2021년 1월 1일  
개정 2021년 3월 1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 명예교수의 자격, 임용절차, 대우 및 보수와 그 밖에 명예교수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자격)** ① 본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일반교원으로서 재직 중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명예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.  
 ②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  
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명예교수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.  
 1. 재직 중 교원인사규정 제44조에 정한 징계의 종류 중 개인의 비위로 인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교원  
 2. 재직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 대학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교원

**제3조(임용절차)** ① 명예교수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학기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.  
 1. 이력서 [별표 1 서식]  
 2. 공적조서 [별표 2 서식]  
 3. 학부(과) 추천의견서 [별표 3 서식]  
 ② 학부(과) 추천 요건은 학과 일반교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학부(과) 일반교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.  
 ③ 명예교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

**제4조(임용기간)** 명예교수의 임용일로부터 시작하며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5조(강의배정)** ① 명예교수에게는 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.  
 ② 총장은 퇴직 전 3년간 강의평가점수 순위백분율 평균이 대학 전체 전임교원의 상위 75% 이내인 교원에 한하여 학부(과)장의 동의를 받아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강의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 
 ③ 명예교수에게는 학기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배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초과할 수 없다.

**제6조(대우 및 보수)** ① 명예교수에게 본 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퇴직일 이후 2년간 연구실을 배정할 수 있다.

② 명예교수의 강사료는 강사 강사료의 2배로 한다. 단, 퇴직일 2년 이후 담당하는 강의의 강사료는 강사 강사료와 동일하게 한다.

**제7조(명예교수 취소)** 명예교수가 본 대학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명예교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**제8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개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적용례)** 이 규칙 시행 전 기존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일반교원에게도 적용한다.

**제3조(다른 규칙의 폐지)** 우대교수 규칙은 폐지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이 력 서

인적사항	성 명		생년월일			
	소속학부(과)	학부		과		
연 락 처	전화번호			휴대폰		
	주 소					
	e-mail					
학 력 사 항	기 간		학교명	학 과	학 위	비 고
	부터	까지				
경 력 사 항 (대학보직 포함)	기 간		기관(업체)명 /부서명	근무부서	직 위	담당업무
	부터	까지				

년    월    일

성 명 : \_\_\_\_\_(인)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2]

## 공 적 조 서

성 명	
공적개요	
교육공적	
학문공적	
기타공적	

년 월 일

성 명 : \_\_\_\_\_(인)
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

[별표 3]

<b>학부(과) 추천의견서</b>			
성 명		연락처	
주 소			
학부(과) 추천의견			
상기와 같이 명예교수로 추천합니다.			
	추천자	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 학부(과)장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 교 수	(인) (인) (인) (인) (인) (인)
동양미래대학교총장 귀하			